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조 례 안 상 정

(조 례 6건)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2 ~ 14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1
2012 ~ 15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 ~ 16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2 ~ 17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12 ~ 18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2 ~ 19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4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 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거창군민의 날을 정함(안 제2조)

○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다. 군민의 날 행사시 통합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문화·예술·체육·축제행사,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그 밖의 기념행사

라.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거창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2.2.13. ~ 2012.3.04.) : 1건 접수(반영)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기간 : 2012. 2. 13 ~ 2012. 3. 04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농업기술센터 소장	○ 군민의 날 행사 통합에 따라 유사 개별조례 (「녹색공간거창농산물 대축제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총괄 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통합행사 추진에 따라 개별행사를 위한 기존 조례 폐지	반영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민의 날을 정하여 군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경축하고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전승과 군민의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거창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념행사 등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 기념 통합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체육·축제 행사
2. 유공 군민에 대한 시상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4. 그 밖의 기념행사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녹색곳간거창농산물대축제 운영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군민의 날(매년 9월 25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민의 날 기념식, 아림제, 녹색공간축제, 사과마라톤대회, 군민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기타 부대행사의 제비용
- 관련조문 : 제4조(기념행사추진위원회 구성)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추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도비		5	5	5	5	5	25
	군비		974	1,023	1,074	1,128	1,185	5,384
	소계(a)		979	1,028	1,079	1,133	1,190	5,409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979	1,028	1,079	1,133	1,190	

※ 자재,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율 5% 적용

3. 관련 의견

- 예산 통합 원년인 2012년 이후 비용절감 효과 미비
 - 2011년 대비 2012년도 예산 : 16% 감액편성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5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이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군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준용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각 조항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개정내용 등을 반영함(안 제5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의 개정내용 중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제와 정산은 준용함

○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나. 숙박비 지급기준액 조정(안 별표)

○ 제2호 숙박비 지급기준액을 30,000원
⇒ 40,000원으로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 당초예산확보 : 2,361백만원(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2.3.09. ~ 3.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거창군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거창군 지방공무원</u>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에서</u>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u>범위에서</u>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p>
<p>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p>	<p>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p>	<p>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p>
<p>3.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p>	<p>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p>

현행	개정안
4. 영 제8조의2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거창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u>40,000</u>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 개정되어 숙박비의 상환액을 상향 조정
- 관련조문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세출	도비					
군비			262	262	262	262	262	1,310
소계(a)			262	262	262	262	262	1,310
세입	0							
	지방세							
	소계(b)							
총 비용(a-b)			262	262	262	262	262	

3. 관련 의견

- 숙박비의 상환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여비 증액 : 262백만원
 - 일반출장 : 1인 연간 출장일수 120일 중 관외 30% 기준, 36일
 ※ 36일 × 10,000원 × 650명 = 234,000,000원
 - 교육출장 : 2일이상 교육일수 2,780일
 ※ 2,780일 × 10,000원 = 27,800,000원

작성자 : 행정과장 정삼영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6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현재 조성 중인 거창일반산업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월평리 일부와 대산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입주자들이 겪을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남상면 월평리(15필지 217,733㎡) 일부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

⇒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2.3.06. ~ 3.2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제2조 관련)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상 립 리	종래 상동 일원, 종래 송정리 일원 중 225-2, 1059-2 ~ 1059-35번지 및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7-1번지
	중 앙 리	종래 하동 일원
	대 동 리	종래 동동 일원
	대 평 리	종래 중동 일원 중 대평리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김천리 일원 중 46, 47-2번지
	김 천 리	종래 김천동 일원 중 김천리 46, 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래 대평리 일원 중 1303-1, 1303-2, 1303-3, 1303-5, 1304-8, 1463-10, 1473-15번지
	송 정 리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 ~ 산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1004 ~ 1047, 1085 ~ 1087, 225-2, 1059-2 ~ 1059-35번지를 제외한 지역
	정 장 리	종래 정장리 일원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6 ~ 1638, 1642-1 ~ 1642-7, 1647-2번지
	장 팔 리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 ~ 406-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 1635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거 창 읍	서 변 리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 ~ 1147-60, 1147-62, 1147-63, 1147-69 ~ 1147-82, 1147-84 ~ 1147-96, 1147-99 ~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 ~ 1147-122, 464-1 ~ 464-3, 464-5, 464-6, 465-1, 480-1, 481-1 ~ 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학리 1047-4, 1047 -31번지와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
	동 변 리	종래 동변리 일원
	학 리	종래 학리 일원 중 1047-4, 1047-3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일원 중 1147-55 ~ 1147-60, 1147-62, 1147-63, 1147-69 ~ 1147-78, 1147-82, 1147-84 ~ 1147-94, 1147-99, 1147-102, 1147-104, 1147-114, 1147-116 ~ 1147-122, 464-1 ~ 464-3, 464-5, 464-6, 465-1, 480-1, 481-1 ~ 481-4, 482-1, 482-2, 482-4, 482-6, 482-7, 483, 483-1, 483-2, 483-4번지
	양 평 리	종래 양평리 1239-69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서변리 1147-79 ~ 1147-81, 1147-95, 1147-96, 1147-100, 1147-101번지
	가 지 리	종래 가지리 일원 중 1333, 1333-7번지를 제외한 지역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주 상 면	도 평 리	종래 도평리 일원
	연 교 리	종래 연교리 일원
	내 오 리	종래 내오리 일원
	완 대 리	종래 완대리 일원 및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 ~ 1950번지
	성 기 리	종래 성기리 일원
	거 기 리	종래 거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용 양 면	동 호 리	종래 동호리 일원
	죽 림 리	종래 죽림리 일원
	노 현 리	종래 노현리 일원
	산 포 리	종래 산포리 일원
	군 암 리	종래 군암리 일원
	신 촌 리	종래 신촌리 일원
	한 기 리	종래 한기리 일원
고 제 면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중 1939 ~ 1950번지를 제외한 지역
	개 명 리	종래 개명리 일원
	봉 산 리	종래 봉산리 일원
	봉 계 리	종래 봉계리 일원
	궁 향 리	종래 궁향리 일원
북 상 면	갈 계 리	종래 갈계리 일원
	소 정 리	종래 소정리 일원
	농 산 리	종래 농산리 일원
	병 곡 리	종래 병곡리 일원
	산 수 리	종래 산수리 일원
	월 성 리	종래 월성리 일원
	창 선 리	종래 창선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위 천 면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남 산 리	종래 남산리 일원
	상 천 리	종래 상천리 일원
	강 천 리	종래 강천리 일원
	황 산 리	종래 황산리 일원
	당 산 리	종래 당산리 일원 및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
	모 동 리	종래 모동리 일원
마 리 면	영 승 리	종래 영승리 일원
	율 리	종래 율리 일원 중 578, 579, 654, 655, 663-1, 663-3, 664번지를 제외한 지역
	월 계 리	종래 월계리 일원
	말 흘 리	종래 말흘리 일원
	고 학 리	종래 고향리 일원
	대 동 리	종래 대동리 일원
	하 고 리	종래 하고리 일원 및 종래 송정리 일원 중 산107~109, 산110-1, 산118, 산119-5, 산120, 산121, 산122, 산144, 산1004~산1047, 1085~1087번지
남 상 면	춘 전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 일원
	진 목 리	종래 함양군 안의면 진목리 일원
	둔 동 리	종래 둔동리 일원
	오 계 리	종래 오계리 일원
	무 촌 리	종래 무촌리 일원 중 1634~1638, 1642-1~1642-7, 1647-2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팔리 일원 중 406-1~406-4번지
	송 변 리	종래 송변리 일원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및 종래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중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번지를 제외한 지역
	전 척 리	종래 전척리 일원
	임 불 리	종래 임불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남 하 면	둔 마 리	종래 둔마리 일원
	양 향 리	종래 양향리 일원
	무 룡 리	종래 무룡리 일원
	대 야 리	종래 대야리 일원
	지 산 리	종래 지산리 일원
신 원 면	수 원 리	종래 수원리 일원
	양 지 리	종래 양지리 일원
	구 사 리	종래 구사리 일원
	과 정 리	종래 과정리 일원
	덕 산 리	종래 덕산리 일원
	청 수 리	종래 청수리 일원
	중 유 리	종래 중유리 일원
	대 현 리	종래 대현리 일원
	와 룡 리	종래 와룡리 일원
가 조 면	석 강 리	종래 석강리 일원,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 및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을 제외한 지역
	기 리	종래 기리 일원 중 394~408, 409-1, 410-1, 411-1, 524-1, 526-1, 527-2, 528-7, 529-4, 530-1, 531-1, 532-4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조 면	대 초 리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를 제외한 지역
	동 례 리	종래 동례리 일원 중 1739-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649-4, 649-14, 654-11, 699-133, 699-134, 699-136~699-141, 699-143, 699-144, 699-181, 699-193, 699-194번지
	장 기 리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
	사 병 리	종래 사병리 일원
	마 상 리	종래 마상리 일원
	수 월 리	종래 수월리 일원
	일 부 리	종래 일부리 일원, 종래 석강리 일원 중 919-1, 919-3, 920-1, 921-1, 922~927, 928-2, 928-3, 929-1, 931-1, 932, 933-2, 933-4, 935-1, 1025, 1026, 1209, 1209-6, 1210, 1211, 1212, 1224-1, 1224-3, 1230~1240, 1242~1259, 1261~1263-3, 1264~1265-1, 1355-8~1355-11, 1356-1, 1356-4, 1356-5, 1357-4, 1378-1, 1378-2, 1378-48~1378-50, 1378-54, 1390~1392-1 및 종래 대초리 일원 중 1~5-3, 6-1~6-3, 7-1~7-3, 8-1, 8-2, 9-1~11-2, 14, 15, 16-2~16-4, 17-1, 18-1~24-2, 24-5, 25-1, 25-3, 31, 32, 33-1, 83-1, 84-1, 85-1, 86-1, 88-3, 89-3, 90-3, 91-1, 92-1, 92-2, 408-1, 408-2, 409-3, 409-5, 409-11, 699-91, 699-92, 699-127, 699-128, 699-165~699-167, 699-182, 700, 701-2, 701-4, 701-6, 701-7, 701-8번지
	도 리	종래 도리 일원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가 북 면	우 혜 리	종래 우혜리 일원
	박 암 리	종래 박암리 일원
	몽 석 리	종래 몽석리 일원
	용 암 리	종래 용암리 일원
	중 촌 리	종래 중촌리 일원
	해 평 리	종래 해평리 일원
	용 산 리	종래 용산리 일원 중 627-1~627-12, 628-1~628-7, 641, 647, 648, 649, 671-1번지를 제외한 지역 및 종래 장기리 일원 중 715-1~715-12, 719-1~719-12, 724, 725, 727-3번지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이 아님

4. 작성자

행 정 과 장 정 삼 영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7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p>1.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제안제도를 운영 중인 바 ○ 이 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p>가. 제안제도의 본래 목적인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제안의 목적 범위를 확대 규정함(안 제1조)</p> <p>나. ‘제안’과 일반 ‘의견 제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용어의 정의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여 정의함(안 제3조)</p> <p>다. 제안 채택의 주요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안 내용의 실현 가능성 여부의 중요성 강조(안 제5조)</p> <p>라. 제안의 제출, 접수, 채택, 심사, 포상, 사후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의 구체성 확보</p>
<p>3.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제안규정」, 「국민 제안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p>나. 예산조치 : 당초 예산확보(23,700천원)</p> <p>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p> <p>라. 그 밖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2.3.13. ~ 4.0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제안을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공무원이 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 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4조(제안의 제출 등) ① 제안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연중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모 제안을 실시할 경우 공모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제안자가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현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6. 노력의 정도

제6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범위 결정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결정
3. 자체 우수제안의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능력 및 실무경험이 많은 부서 내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채택제안 등급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채택제안이 행정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그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승계)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군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1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8조제3항(부상금의 지급)

: 포상자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4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 공 순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8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외국어 교육특구 및 신활력 사업의 만료로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에 따른 군비 지원이 증가되어 교육에 대한 군의 역할이 가중되고 교육 여건개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되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준액을 변경함(안 제3조)

- 당해연도일반회계 지방세의 15퍼센트 범위안
⇒ 해당연도 예산범위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의 체계등을 정비하여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함(안 제4조, 제5조, 제7조 ~ 제13조)

- 각호 ⇒ 각 호 , 한 때에는 ⇒ 한 경우에는
- 당해 ⇒ 해당, 인 ⇒ 명, 기타 ⇒ 그 밖에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당초예산확보 : 3,459백만원(비용추계서 작성)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2. 3. 13. ~ 4. 04.)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로 한다.

제2조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군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당해연도일반회계 지방세의 15퍼센트 범위안”을 “해당 연도 예산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교육장”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제5조제1항 본문·제9조 본문·제12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관할 교육청”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인”을 “3명”으로, “2인, 거창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인, 기타”를 “2명,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그 밖에”로, “인사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 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호·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u>거창군 관내 고등학교이하</u>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 ----- <u>군내 고등학교이하</u> <u>각급학교</u>----- ----- ----- -----</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u>각급학교</u>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 <u>군내 고등학교이하</u>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 ----- ----- -----</p>
<p>1. ~ 8. (생략)</p>	<p>1. ~ 8. (생략)</p>
<p>제3조(보조기준액)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u>당해연도일반회계 지방세의 15퍼센트 범위안</u>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기준액) ----- ----- ----- 해당연도 예산 범위----- -----</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u>각급학교의 장이</u>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u>[별지 제1호서식]</u>의 신청서를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u>교육장</u>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p> <p>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 ----- ----- <u>별지 제1호서식</u>----- ----- <u>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u> ----- ----- -----</p> <p>② ----- <u>각 호</u>-----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u>제4조의 규정에 의한</u>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u>때에는</u> 교부결정의 내용을 <u>관할 교육청</u>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u>제4조에 따른</u> ----- ----- <u>각 호</u>----- ----- 1. ~ 3.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u> ----- ----- <u>경우에는</u> ----- <u>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u> ----- ----- -----</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군청 공무원 <u>3인</u>,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u>2인</u>, 거창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u>1인</u>,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u>인사</u>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1명</u>을 포함한 10명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3명</u> ----- -----<u>2명</u>, <u>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u>이 추천하는 <u>소속 공무원 1명</u>, 그 밖에 ----- ----- <u>사람</u>으로 ----- ----- -----</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④ ----- <u>한 차례만</u> ----- -----</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며, 간사는 창조정책과의 교육진흥담당주사가 된다.</p>	<p>⑤ ----- ----- <u>1명</u> ----- -----</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u>통할</u>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u>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u>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u>총괄</u> ----- ② -----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u> ----- -----</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당해</u>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2. ~ 3. (생략) 4. <u>기타</u> 군수가 <u>부의하는</u> 사항</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u>각 호</u>의 사항을 심의한다. 1. <u>해당</u> ----- 2.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u>회의에 부치는</u> -----</p>
<p>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생략)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u>때</u>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u>때</u>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u>때</u> 4. <u>기타</u>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u>때</u></p>	<p>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u>경우</u> 2. ----- <u>경우</u> 3. ----- <u>경우</u> 4. <u>그 밖에</u> ----- <u>경우</u> -----</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u>각호</u>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조사업을 개시한 <u>때</u>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u>때</u>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u>기타</u>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p>② (생략)</p>	<p>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 ----- <u>각 호</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경우</u>----- 2. ----- 3. ----- <u>경우</u>----- 4. <u>그 밖에</u>-----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 ----- ----- <u>범위</u>----- -----</p>
<p>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u>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u>」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준용) ----- ----- ----- ----- <u>「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u>의 규정 -----</p>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

나. 관련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합계
총 비용(a - b)		3,459	3,805	4,185	4,603	5,063	21,115
세출	군 비	3,459	3,805	4,185	4,603	5,063	21,115
	소계(a)	3,459	3,805	4,185	4,603	5,063	21,115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예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유치원, 초·중·고 지원 및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작성자 : 창조정책과장 이 환 철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19
----------	-----------

제출연월일	2012. 4. 09.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복지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강료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의 용어·문장·체계를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정함(안 제3조)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
다.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5조)

○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염병질환자, 공공질서유지에 방해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등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사용료 징수·감면·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부업훈련과정, 취미교실과정, 아동교실 수강료 인상함(안 별표 1)
: 1개월 8,500원 ⇒ 1개월 10,000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함(안 별표 2)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군의 사정으로 복지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액 및 일부 반환함(안 별표 3)

마. 준용규정을 둠(안 제9조)

○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별표 2
「지방자치법」 제139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기획감사실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2. 02. 15. ~ 3. 06.)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복지관은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3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군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3. 지역사회조직사업
4. 교육문화사업
5. 자활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6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 군수는 최소한의 수강료 또는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시설 사용을 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복지관의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대강당 -주간 -야간	-1회 3시간 -1회 3시간	-40,000원 -50,000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10,000원 가산 ○ 토요일일, 공휴일은 평일 총 요금의 30% 가산
2. 소강당 -주간 -야간 -전시용도	-1회 3시간 -1회 3시간 -1일 10시간	-10,000원 -15,000원 -20,000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5,000원 가산 ○ 토요일일, 공휴일은 평일 총 요금의 20% 가산
3. 부업훈련과정별	<u>1명/1개월(과목당)</u>	<u>10,000원</u>	
4. 취미교실과정별	<u>1명/1개월(과목당)</u>	<u>10,000원</u>	
5. 아동교실	<u>1명/1개월(과목당)</u>	<u>10,000원</u>	
6. 노인교실	-	무 료	

[별표 2]

복지관 사용료 감면율
(제6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100
복지향상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1명/1과목)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이며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가 만 18세미만인 가구(1명/1과목)	
자원봉사증 가진 사람(1과목)	100분의 50
사회봉사단체, 비영리단체가 자체행사를 할 경우	

비 고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1개만 감면한다.

[별표 3]

사회복지관 사용료 반환기준
(제6조제3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기준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복지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복지관 시설등의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신고할 경우	
복지관 시설등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고할 경우	100분의 50 반환
·복지관 사용 중 사용을 포기 또는 중단한 경우 ·사용개시 이후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료를 일할계산 후 남은기간에 대하여 전액반환
복지관 강좌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수강을 포기할 경우	전액 반환
복지관 강좌 수강도중 포기할 경우	해당월을 제외한 남은기간의 전액 반환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시설관리사업소장 최 종 승